
	규정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페이지	1/22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 제3장 계약방법
-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부칙
- 별첨

작성부서	용도과	제정일자	1998. 05. 01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기획처장	행정부총장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문서번호	TWP-A15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제정일자	1998. 05. 01.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페이지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1	2009. 01. 30.	· 3차 개정
2	2012. 05. 25	· 형식 변경에 따른 전부개정. ·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위함.
3	2014. 01. 21	· 부속기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규정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페이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의 물품의 제조·구매, 시설물공사, 용역 그 밖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구매, 시설물공사, 용역 그 밖의 계약(이하 “물품 등 계약”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②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③ “경쟁 입찰”이라 함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을 총칭한다.
- ④ “계약담당자”라 함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총장 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무처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각 행정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 계약 사무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 법령에 따른다.


제4조(계약담당자) ① 계약담당자는 총장 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총장은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담당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계약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할 수 있다.

제5조(담당부서) 이 대학교의 각 행정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 계약 사무에 관한 업무는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다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물품구매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되, 그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규정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페이지

제6조(구매요청) ① 각 부서에서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제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요구서에 설계도면, 사양서, 시방서, 카탈로그 및 도면전본,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매·제조를 청구하는 물품이 특별히 정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추정가격)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구매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구매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구매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구매 가능한 금액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 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h2 style="margin: 0;">규정</h2>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h3 style="margin: 0;">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h3>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페이지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총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④ 총장은 제1항 각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결정시 계약수량, 이행진행,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⑤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제9조(예정가격의 비치 및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이 외부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 협상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3. 제32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4.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일괄입찰의 경우
 6. 기본설계 제안입찰의 경우
- ③ 계약담당자는 제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

	규정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따라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장 계약방법

제10조(계약방법) ①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등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②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1조(경쟁 입찰) ① 제10조의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경쟁 입찰을 함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이 대학교가 정하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견본 등을 숙지시키고 이를 수락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 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물품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인감증명서
4.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이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12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1 style="margin: 0;">규정</h1>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h2 style="margin: 0;">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h2>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페이지

제13조(공사의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나. 입찰유의서
 - 다.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 라.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 마.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
 - 바. 입찰안내서
 - 사.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제1항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와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한다.
2.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한한다.

제14조(공사의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3일

제15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h2 style="margin: 0;">규정</h2>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h3 style="margin: 0;">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h3>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가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계약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 입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제한경쟁입찰) ① 제1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 원 이상

	<h2 style="margin: 0;">규정</h2>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h3 style="margin: 0;">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h3>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 원 이상
2.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고시금액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7억 원
3.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4. 그 밖에 시행령 제21조제1항과 그 밖의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
- ②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8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여 경쟁참가자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자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자격자에게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기준을 정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9조(지명경쟁입찰의 대상)** ① 제1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h2 style="margin: 0;">규정</h2>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h3 style="margin: 0;">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h3>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6.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 이외에 시행령 제23조제1항과 그 밖의 법령에서 지명경쟁입찰계약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제17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계약담당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22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26조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②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③ 제2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h1 style="margin: 0;">규정</h1>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h2 style="margin: 0;">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h2>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수의계약의 보고) ①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 법령 또는 규정의 조문과 구체적인 적용사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24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3. 견적서 제출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명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③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안내공고를 게시하여 견적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25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규정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제26조(입찰공고) ①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 입찰공고게시판 또는 이 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제32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28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규정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대학귀속에 관한 사항
8. 낙찰자결정방법(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10.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4.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5. 시행령 제36조제12의2호 이하의 사항
16.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가 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신청마감일 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의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입찰서의 제출·접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찰자는 총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31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 낙찰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1.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15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3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이 대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위원회는 사무처장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3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품질등표시서를 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35조(계약서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또는 「기술용역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계약서에 따르기가 곤란한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

	규정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 체결 시 부기한 총 공사 또는 총 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 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 ⑤ 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⑥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제출하는 방법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규정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③ 제1항 및 제2항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제38조(손해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제40조(하자담보책임)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표 1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1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4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한 것일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종별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4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의 경우에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한다.

제44조(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이라 한다)을 이 대학교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보증금은 사무처 재정과에서 보관한다.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및 각종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증서의 경우에도 사무처 재정과에서 보관한다.<개정 2014.01.21.>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46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규정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47조(계약의 해제·해지)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보증금을 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5.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7.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자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이 대학교에 손해를 끼친 자
10. 제1호부터 제9호 이외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h1 style="margin: 0;">규정</h1>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h2 style="margin: 0;">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h2>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페이지

호의 사유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작성하여 보관하고 구매담당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 내에는 이 대학교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⑥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한다.


제49조(선금급) 계약담당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비, 그 밖에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구매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해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계예규 제3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계약금액이 3천만 원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 원 이상인 용역계약의 경우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검수) ① 물품 구매가 확정되면 구매담당부서에서는 「구매물품 및 검수조서(교내용)」를 작성하여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검수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검수규정에 따른다.

제51조(관련문서) 이 규정의 관련문서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	문서번호	TWP-A151	
		제정일자	1998. 05. 01.	
	구매업무 및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4. 01. 21.	
		개정번호	3	페이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별지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